

진도군 제4기 주민자치회 위원 총원모집 공고

「진도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지역의 주요 과제를 주민이 참여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풀뿌리 주민자치활성화 및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 조성을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(추천) 모집합니다.

2026. 6. 19.

군 내 면 장



1. 모집기간 : 2026년 6월 19일 ~ 2026년 6월 30일(11일간)
2. 모집인원 : 3명
3. 접수방법 : 군내면사무소 총무팀 방문접수(평일, 근무시간 09:00~18:00까지)
4. 자격요건 :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필수 요건(사전교육이수)을 갖추고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필수 요건 :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(6시간) 이수자
 - ※ 경기도 평생학습포털(www.gseek.kr)에서 경기도 주민자치회 온라인 기본교육(의무과정 6시간) 수료 또는 읍·면 자체 운영하는 영상교육 수료
 - ① 군내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 - ② 군내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 종사자(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사람)
 - ③ 군내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, 기관, 단체의 임·직원
 - ※ 「공직선거법」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
 - ※ 「공직선거법」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, 선거사무원,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, 회계책임자, 연설원, 대담·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음.

5. 임 기 : '2026. 7. 10. ~ '2027. 3. 5.(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)

- 「진도군 주민자치활성화 조례」 제17조(위원의 임기)에 의거

6. 제출서류

- 신청서 또는 추천서 1부.
-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(6시간) 수료증 1부.
- 개인정보수집·이용·제공동의서 1부.

7. 선정결과 발표 : 개별 통보

8. 유의사항

- 가. 교육이수자를 선발함에 따라 사전교육 미이수자는 위원으로 위촉 될 수 없습니다.
- 나.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.
- 다. 주민자치회 위원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가지며 「공직선거법」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.

<주민자치회 위원의 임무>

-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임
- 주민자치회 기능
 -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
 -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처리
 - 주민총회, 자치(마을)계획 수립, 마을축제, 마을 신문·소식지 발간, 공동체 형성, 기타 각종 교육 활동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주민자치업무
-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
 -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.
 -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 하여서는 아니 됨.

9. 접수처 및 문의사항 : 군내면사무소 총무팀 (☎ 061-540-6555)